

의안번호	제 123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1월 9일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
----------	-----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9일

발 의 자 : 이상식,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정, 하유정, 송미애

1. 제안 이유

-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 하기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 인·검사(안 제8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불 입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18.12.21 ~ 2019.1.10.(2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농촌정착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자체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시장·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

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통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농촌창업 정착금 지원 및 안정영농 자동화시설 기반 구축, 경영 능력 향상 컨설팅과 교육운영비 지원에 따른 제비용

3. 관련 조문

- 안 제6조(지원사업) 제1항~6항
 -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농촌창업 정착금 및 안정영농 생산기반 자동화 시설 구축, 경영진단 컨설팅, 현지교육 운영비
- 나. 추계의 전제 : 2019년도 단위사업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
- 다. 추 계 결 과 : 2019 ~ 2023년(5년간)사이 세출 87억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7억(8%), 도비 22억(25%), 시군 49억(56%), 자담 9억(11%)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외 6종	8,717,200	1,269,200	1,685,000	2,039,000	2,069,000	1,655,00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 ## 6. 작성자 :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이강명(220-3520)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양춘석(220-5710)

[별첨]

청년농업인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2019~2023)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부서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7개 사업	합 계		8,717,200	1,269,200	1,685,000	2,039,000	2,069,000	1,655,000
	국비		705,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도비		2,165,500	290,900	414,200	523,100	529,400	407,900
	시군비		4,903,700	652,300	935,800	1,189,900	1,204,600	921,100
	자담		943,000	185,000	194,000	185,000	194,000	185,000
농업 정책과	농촌창업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소 계	4,224,000	384,000	768,000	1,152,000	1,152,000	768,000
		도비	1,267,200	115,200	230,400	345,600	345,600	230,400
		시군비	2,956,800	268,800	537,600	806,400	806,400	537,600
농업 기술원	소 계	소 계	4,493,200	885,200	917,000	887,000	917,000	887,000
		국비	705,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141,000
		도비	898,300	175,700	183,800	177,500	183,800	177,500
		시군비	1,946,900	383,500	398,200	383,500	398,200	383,500
		자담	943,000	185,000	194,000	185,000	194,000	185,00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비	4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시군비	4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자담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영농 4-H기 활력화 반구축	계	810,000	150,000	180,000	150,000	180,000	150,000
		도비	170,100	31,500	37,800	31,500	37,800	31,500
		시군비	396,900	73,500	88,200	73,500	88,200	73,500
		자담	243,000	45,000	54,000	45,000	54,000	45,000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기반조성	계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도비	420,000	84,000	84,000	84,000	84,000	84,000
		시군비	980,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196,000
		자담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아카데미	계	173,200	33,200	35,000	35,000	35,000	35,000
		도비	173,200	33,200	35,000	35,000	35,000	35,000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계	360,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국비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도비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시군비	12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농업인 학교 습단체 운영	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도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